

자주 있는 질문

Q 동일 세대, 부양이란 어떤 의미인가요? 조부모택에서 생활하는 아동이 있는 경우, (별거 중인)부모에게 해당 아동분이 지급되니까?

A • 동일 세대란 주민표 상 하나의 세대를 뜻합니다. 또한, 부양이란 아동을 본인의 수입으로 부양하는 것을 뜻하며, 아동과의 동거, 별거 여부는 상관없습니다.
 • '조부모택에서 생활하는 아동' 의 아동 가산은 원칙적으로 동일 세대의 세대주인 조부모가 지급 대상자입니다. 단, 부모 등 별도 세대의 세대주로부터 '아동을 부양하고 있음' 을 알려주시면 부모 등의 세대가 지급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Q 어떤 입금 명목으로 입금되니까?

A 입금명은 '코도모·코우베시クラシエンリンジトクベツキュウフキン' 입니다.
 ※은행에 따라서는 송금 명목으로서 입력할 수 있는 문자수에 제한을 두고 있는 경우도 있어, 모든 문자가 표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입금시 입금 통지 등이 옵니까?

A 우편이나 메일에 의한 통지는 하지 않으므로 확인서 혹은 WEB 신청 시에 지정한 계좌의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지급 상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확인서(문의) 번호를 입력하면
 홈페이지에서 지급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神戸市暮らし支援臨時特別給付金 支給状況照会

검색



Q 신청 기한이 지난 후에도 급부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A 기한까지 신청하지 않으면 급부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기한까지 수속을 끝내 주십시오 (신청 기한 : 우편은 2024년 6월 30일 소인 유효, WEB은 2024년 6월 30일 중).



그거, 사기일지도 모릅니다!
 '개인정보',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의 사취에
 주의하세요!

'보이스 피싱' 이나 '개인정보 유출' 에 주의해 주십시오. 고베시에서는,

- ATM (현금자동인출기) 조작을 요구하는 것
- 지급을 위한 수수료 입금을 요구하는 것
- 신용카드나 예금통장을 달라고 하는 것
- 비밀번호를 가르쳐 달라고 하는 것을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수상한 전화, 우편물, 메일이 왔다면 가까운 경찰서 (또는 경찰상담 전용전화 #9110) 로 연락해 주십시오.

문의처

고베시 생활지원 임시
 특별급부금 전용 콜센터

TEL : 078-771-7201

(접수 시간) 8:45~17:30(토일공휴일 제외)

듣거나 말하기가 부자유한 분의 상담은 여기로
 (해당하지 않는 분의 이용은 삼가 주십시오.)

FAX : 078-771-5285

이메일 주소: kobe_rinjitokubetu_kyufukin@os.tempstaff.jp

*여러 언어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Multilingual support

[Korean, Chinese, English, Spanish, Portuguese,
 Tagalog, Vietnamese, Nepali]

TEL : 078-771-7201

Reception hours : 8:45~17:30

(Except for weekends and national holidays)

최신 정보는 여기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神戸市暮らし支援臨時特別給付金

검색



생활지원 임시 특별급부금(10만엔)에 관한 서류를 받으신 분은
 본 급부금과 함께 해당 수속도 진행 부탁드립니다.

생활지원 임시 특별급부금 안내

(물가 상승 대응 중점 지원 지방 창생 임시 교부금을 활용한 급부금)

고베시 생활지원 임시 특별급부금에 대해 2023년도 주민세 과세 상황에 근거해
 지급 예정액(18세 이하 대상 아동에 대해 1인당 5만엔)을 지급합니다.

이하 내용을 확인 후 하기 신청 마감일까지 '동봉된 확인서의 반송' 혹은 'WEB
 신청' 을 해 주십시오. 어떠한 수속도 하지 않을 경우 급부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동봉된 확인서 앞면 오른쪽 위의 확인서(문의) 번호를 기록해 두십시오.

※신청 후, 지급 상황 조회 홈페이지에서 확인서(문의) 번호를 입력하시면 지급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확인서(문의) 번호

지급 요건

구청, 시청에 상담 창구는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상 요건

<대상 아동>

○기준일(2023년 12월 1일)에 급부 대상 세대의 세대주와 동일 세대로 되어있는 18세 이하 아동

※18세가 되는 날 이후 최초의 3월 31일까지의 아동(2005년 4월 2일 출생 이후)

※세대주가 부양하지 않는 아동이 있을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아동분의 급부금을 세대주에게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주민표 주소지가 다른 아동을 부양하고 있는 경우, 콜센터(078-771-7201)로 연락해 주십시오.

○2023년 12월 1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

※언제까지 태어난 아동이 대상인지 결정되는 대로 홈페이지에서 공표합니다.

※2023년 12월 2일부터 2024년 1월 31일까지 태어난 것을 고베시가 파악하고 있는 아동은 앞면에 기입되어
 있습니다. 이후에 태어난 아동이 있는 세대는 익월 말까지 고베시에서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보내드립니다.

(예시) 2월 출생 → 3월 말에 필요 서류 발송

※기준일(2023년 12월 1일) 이후 타 도시로 전출한 경우, 전출일 이후에 아동이 태어난 것을 고베시로서는 파악할 수
 없으므로 고베시로부터 서류를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또한 별도 신청에 필요한 서류 등도 있습니다. 아동이 태어난
 경우, 먼저 콜센터(078-771-7201)로 연락해 주십시오.

<지급 대상>

이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세대의 세대주

○기준일(2023년 12월 1일)에 고베시의 주민기본대장에 기록되어 있는 세대

○세대 전원이 2023년도 주민세 '균등할만 과세자' 또는 '균등할만 과세자 및 균등할 비과세자' 로
 구성된 세대

○세대 전원이 주민세 균등할이 과세되고 있는 다른 친족 등(자녀, 부모 등)의 부양을 받고
 있지 않을 것

○세대 안에 주민세 과세(균등할만의 과세를 제외)가 되는 소득이 있지만 미신고인 사람이 없을 것

○이미 본 제도에 근거해 '급부 대상이 된 아동분' 의 급부금을 수급한 세대가 아닐 것

※본 급부금의 수급 후에 새로 급부 대상이 된 아동이 태어난 경우를 제외

●수급권자 대상요건을 만족하는 세대의 세대주

●급부금액 대상 아동 1명당 5만엔

●지급방법 확인서에 기재되어 있는 은행 계좌로 송금 ※변경하고 싶은 경우는 뒷면 '급부까지의 과정' ③을
 참조해 주십시오.

●신청 마감일 ·(WEB) 2024년 6월 30일 중 ·(우편) 2024년 6월 30일 소인 유효

급부수속

둘 중 하나의 방법으로 수속해 주십시오.

WEB 수속

'e-KOBE(고베시 스마트 신청 시스템)' 에 의한 신청 방법
 자세한 내용은 뒷면 '급부까지의 과정' ①을 참조해 주십시오.

우편 수속

동봉된 확인서를 기입하여 우편 발송하는 방법
 자세한 내용은 뒷면 '급부까지의 과정' ② 또는 ③을 참조해 주십시오.

※이미 생활지원 임시 특별급부금(10만엔)을 신청하신 경우라도, 이번 수속을 하지 않으면 본 급부금(어린이 1명당 5만엔)은 급부되지 않습니다.

급부까지의 과정 둘 중 하나의 방법으로 수속해 주십시오.

아래 사항을 확인하신 후 고베시 생활지원 임시 특별급부금 급부 수속을 해 주십시오.

- 수취 계좌로 입금 수속한 뒤, 기재 오류 등의 사유로 입금이 완료되지 않고, 2024년 7월 31일까지 수급권자(대리인도 포함됩니다.)와 연락·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급부 수속이 취하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수급 자격 확인시 공적 서류 등을 확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공적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관계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WEB(e-KOBE) 수속

수속마감일 2024년 6월 30일 중

① e-KOBE 에 로그인하여 수속합니다.

- 수중에 '확인서' 를 준비하신 후, 오른쪽의 2차원 코드로 신청 화면에 접속해 주십시오.
- e-KOBE를 처음 이용하시는 분은 화면 우측 상단의 신규 등록 버튼을 눌러 등록하실 필요가 있으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 시스템 안내에 따라 입력을 진행해 주십시오.
- 확인서 앞면 오른쪽 상단에 기재된 확인서(문의) 번호 입력이 필요합니다.
- 새로 입금 계좌의 등록 또는 확인서에 기재된 계좌로부터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아래 서류의 업로드가 필요합니다.
 - a 본인확인 서류*
 - b 입금 계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대리수급은 WEB에서 수속할 수 없습니다. 콜센터(078-771-7201)로 전화해 주십시오.

우편 수속

회신마감일 2024년 6월 30일 소인 유효

② 확인서 앞면에 기입된 계좌로 입금하기를 희망하시는 분

필요한 것

- 확인서

제출(우편)

- 확인서에 필요사항을 기입하여 회신용 봉투로 발송해 주십시오.

③ 확인서 앞면에 기입된 계좌 이외의 계좌로 입금을 희망하시는 분

먼저 콜센터(078-771-7201)로 전화하셔서 '계좌 변경 신청서' 를 받아 주십시오.

필요한 것

- 확인서
- 계좌 변경 신청서
- 본인 확인서류의 사본*
- 입금 계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

제출(우편)

- 확인서에 필요사항을 기입하여 필요서류와 함께 회신용 봉투로 발송해 주십시오.
- *주소를 변경했을 경우, 변경 후의 주소를 알 수 있는 면의 사본도 첨부해 주십시오.

확인서 혹은 WEB 신청의 내용에 미비가 없으면, 신청 접수 후, 2주일 정도 후에 지정한 은행 계좌에 송금됩니다.

*신청 개시 직후에는 다수의 회신이 예상되므로, 접수에서 입금까지 1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미비한 점이 있는 경우, 우편 혹은 메일(WEB 수속일 경우에만)로 연락드리므로 대응 부탁드립니다. 또한 전화번호의 기재가 있는 경우는 전화로 연락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확인서 기입방법

기입예

1 世帯主 (受給権者) 基準日(令和5年12月1日)において、神戸市の住民基本台帳に記録されている方
以下の表面及び裏面の内容を確認し、記載内容に相違なければ、自署欄に氏名を記入ください。

令和5年 12月1日時点 世帯主氏名 生年月日	コウベ タロウ 神戸 太郎 平成12年12月31日	住所 兵庫県神戸市中央区加納町6丁目5-1
----------------------------------	---------------------------------	--------------------------

■対象児童 令和5年12月1日時点で神戸市に住民登録されている児童を印字しています。扶養していない児童がいる場合は二重線で取り消してください。
なお、金額の訂正が必要な場合は、「訂正金額入力欄」に、「訂正後の人数」と「訂正後の金額」をご記入ください。

No.	氏名	生年月日
1	神戸 真知子	平成●●年●●月17日
2	神戸 花子	平成●●年●●月14日
3	神戸 一郎	平成●●年●●月 7日
4	神戸 英	平成●●年●●月17日
5	神戸 太郎	平成●●年●●月●●日
6	神戸 道子	令和●●年●●月 9日
7	神戸 礼子	令和●●年●●月19日
8	神戸 光	令和●●年●●月25日
9		

支給金額：18歳以下の児童 8名×5万円= 40万円 訂正金額入力欄：7名×5万円= 35万円
この確認書の記載内容に相違ありません。 ※自署が困難な方は、代筆可

A 世帯主氏名(自署) **神戸 太郎** 確認日(記入日) 令和▲年▲月▲日
日中に連絡可能な連絡先 (000) 000 - 0000

2 受取方法について ここに署名が無いと、給付金は受け取れません!
以下の神戸市が過去に把握した口座に振込を行います。受取口座の変更をご希望される場合は、同封チラシをご確認ください。

右記口座は、令和5年度神戸市暮らし支援臨時特別給付金もしくは児童手当・児童扶養手当で、把握した口座です。	支給口座 神戸銀行 神戸支店 普通 ****567	口座名義 コウベ タロウ
--	---------------------------	--------------

B 扶養하지 않는 아동이 있는 경우

- B-1 대상 아동명, 생년월일을 이중선으로 지워 주십시오.
- B-2 정정 금액 입력란에 '정정 후 인원수' 와 '정정 후 금액' 을 기입해 주십시오.

상기 2에 계좌가 기입되어 있지 않은 분, 기입되어있는 계좌 이외로 입금을 희망하시는 분 및 대리수급의 경우

아래 중 하나의 방법으로 수속해 주십시오.

- 콜센터(078-771-7201)로 전화해 주십시오. 필요서류(계좌 변경 신청서 등)를 보내드립니다.
- WEB(e-KOBE)에 의한 수속(대리수급 제외*)
계좌 변경(세대주의 계좌)만 접수하고 있습니다.
*대리수급을 희망하시는 경우, 콜센터(078-771-7201)로 전화해 주십시오.

대리수급에 관하여

고베시 생활 지원 임시 특별 급부금의 수급권자는 세대주가 되지만, 세대주가 급부금을 수급하기 어려운 경우 세대주를 대신하여 급부금 대리 수급이 가능합니다.

대리수급할 수 있는 범위

- ① 2023년 12월 1일 시점에서의 세대주가 속하는 세대의 세대 구성자
- ② 법정대리인(친권자, 미성년 후견인, 성년 후견인, 대리권 부여 판정을 받은 보좌인 및 대리권 부여 판정을 받은 보조인 등)
- ③ 친족이나 기타 평소 세대주 본인을 돌보는 사람 등으로 고베 시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사람
*또한 세대주와 대리인의 본인확인서류 사본이 필요합니다.